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가단52047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11,233,51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33,5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8. 10. 4.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7. 30. 기준 위 신용카드 거래 등에 따른 C의 채무는 원금 8,500,147원, 연체이자 2,733,367원 합계 11,233,514원이다.

나. 원고는 2021. 8. 24. D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21. 9. 8.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C는 2018. 12. 19.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기 소유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11,233,514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리볼빙 서비스를1)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11,233,5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가입계약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그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를 발행받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자금의 유통을 받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비로소 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신용카드가입계약만을 가리켜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C가 D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신용카드대금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C가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면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D은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대금을 변제하여 오다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3개월이 더 지난 2020.

3. 27. 최초로 신용카드대금 연체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신용카드대금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발생되어 있었거나(같은 시점에 물품구매 및 용역제공 등이 이루어졌거나) 그 무렵 같은 액수가 연체되기 시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렬

별지

다음으로 돌려 갚아나갈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